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3. 12.

개정 2021. 3. 25.

개정 2025. 11. 13.

개정 2026. 8. 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이하 대학원) 전임교원 신규채용의 공고, 심사, 임용 등에 관련된 절차 및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의 인사 관련 규정과 그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상위 규정 및 법령을 따른다.

제3조(교원의 자격) 대학원 전임교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3.25.]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서 서울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규정」의 업적기준에 합당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함

제4조(채용인원 및 채용분야 선정) 원장은 각 학과의 정년퇴임 및 미충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과별로 채용 가능한 인원을 정하고 해당 학과장에게 채용인원 및 채용분야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5조(채용공고) 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채용공고를 공시한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임용예정 시기
2. 지원자격
3. 임용기간
4. 심사사항
5. 제출서류
6. 서류제출기한 및 방법, 장소
7. 결과통지 방법
8.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채용 방침
9. 기타 유의사항

제6조(접수서류) 다음의 서류를 접수한다.

1. 대학교원공개채용지원서

지원서 중 총괄연구실적목록은 대학원 재학 이후부터 응모 시점까지 발간된 연구 업적물의 목록으로서 제목, 연구자, 발간일, 발표지(권, 호, 쪽) 등을 기재

2.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가.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및 제출 편수

응모를 마감하는 월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출판(온라인출판 포함)되었거나 출판이 확정된 2편 이상 3편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고, 제출한 연구실적물을 평가한 후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편의 실적물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제출하는 연구실적물의 2편 이상은 응모자가 연구실적물의 단독연구저자, 공동연구의 제1저자,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나.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 1) 박사학위 논문 : 1인 연구에 준하여 1편의 연구실적물로 인정되나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택하여 1편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함.
- 2) 심사를 받는 정규학술지에 게재된 국내외 논문: 총설, 학술회의논문집, 책의 장.절(book chapter)은 제외
- 3) G7 국가에 등록된 특허
- 4) 국제적 수준의 학술회의 논문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회의로서 해당 학술회의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
- 5) 저서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저서(책의 장절, 역서, 편저 및 사전류 제외)
- 6) 상용 또는 공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기술개발 실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같이 제출)
- 7)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실적
- 8) 산업체 연구계약 실적
- 9) 산업체 교류 실적(산업체에서 수행한 연구년, 겸직, 컨설팅, 산학협동강좌 등)
- 10) 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특수분야의 실적

다. 기타사항

- 1) 연구실적물은 출판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출판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표지 표지와 목차를 함께 제출
- 2) 지원마감일 이후에 출판되는 업적물의 경우 1편에 한하여 출판예정일이 표시된 출판증명서를 첨부하면 업적물로 인정되나, 임용예정일 2개월 전에 출판이 되어야 함.
- 3) 출판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출판 즉시 제출하되,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또한, 실제로 출판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 (추가.삭제.수정 불인정)

3. 학력 및 성적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4. 경력증명서

5. 자기소개서

주요 연구 및 교육 실적과 수상경력 등을 5쪽 내외로 작성

6. 교육 및 연구계획서

강의 가능 과목, 개발하고자 하는 과목 및 중단기 연구계획 등을 5쪽 내외로 작성

7. 추천서

동일분야 전공자 2명 이상

단 계 별	항 목 별	평 가 세 항	배 점	합격기준	비고
기초심사 (1단계)	모집분야 적합성 평가	모집분야 적합성 평가	상(3).중(2).하(1)	"중(2)"이상	
	학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학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적격 또는 부적격	적격	
전공심사 (2단계)	연구실적	학문적 우수성(논문내용 평가)	30(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80%이상	
	총괄연구실적	총괄연구실적	10	50%이상	
면접심사 (3단계)	공개발표	전문성 및 잠재력	20		
		전달능력	10		
	교육 및 연구계획	교육 및 연구계획	10		
	경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및 임용적합성 (인사위원회에서 평가)	전문영역의 경험	15		
		학생지도에 관한 계획이나 실적	5		
		경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일치 또는 불일치		
합 계			100		

제7조(심사) ① 심사는 3단계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15조제1항의 심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② 1단계 기초심사의 사항은 연구실적물에 대한 모집분야와의 적합성과 학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로 하며, 2단계 전공심사의 사항은 학문적 우수성(30점), 그리고 총괄연구실적에 대한 평가(10점)로 하며, 3단계 면접심사의 사항은 공개발표(30점), 교육 및 연구계획(10점), 그리고 경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및 임용적합성에 대한 평가(20점)로 한다.

③ 심사는 사항 별로 심사위원을 정하여 실시하고, 종합평가점수는 2단계 심사와 3단계 심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평정한다.

제8조(1단계 심사) 1단계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학과장은 연구실적물에 대한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심사위원으로 교내 5인 이상, 교외 3인 이상을 각각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이 중 교외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모집 분야와의 적합성을 평가 의뢰한다.
2.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평가) 제출된 연구실적물 각각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심사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사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3인의 평균이 2.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 후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3. 학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심사는 학과장이 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평가하고, 부적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2단계 심사) 2단계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학과장은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으로 교내 5인 이상, 교외 3인 이상을 각각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이 중 교외 2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학문적 우수성을 평가 의뢰한다.
2. (학문적 우수성 평가) 제출된 연구실적물 각각에 대하여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의 5등급으로 평가하고, 연구실적물 각각에 대한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등급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그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평가 점수로 한다.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편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하며, 최종 평가 대상의 인정점수에 따라 가중 환산하여 합산한 것을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최종 평가점수는 환산된 배점의 80% 이상이어야 다음 심사단계로 넘어가고 아니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 후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3. 총괄연구실적심사는 연구실적의 총 편수와 게재학술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최고와 최저점수 차이가 10점 만점에서 5점 이상일 경우 재심사 여부는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9조(3단계 심사대상자 선정)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은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결과 적격자 중 상위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10조(3단계 심사) 3단계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원장은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분야의 교내 전임교원 중 5인 이상을 공개발표, 교육 및 연구계획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면접심사를 의뢰한다.[개정 2021.3.25.]

2. 원장은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공개발표 일정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3. 공개발표(공개강의) 심사

가. 발표자의 공개강의에는 모든 전임교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임교원들은 「강의 평가의견서」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위원은 이를 공개발표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나. 공개발표의 평가항목은 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분야와 관련된 전문성 및 잠재력, 전달 능력을 함께 평가하되, 그 배점은 전문성 및 잠재력 20점, 전달 능력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다. 공개발표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값을 평가점수로 한다. 다만,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값을 평가점수로 한다.

4. 교육 및 연구계획 심사

지원자가 제출한 교육 및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모집분야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계획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와 최저 점수 간에 5.0점(만점의 1/2)이상 격차가 발생할 시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산, 평균한 점수로 한다.

5. 경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및 임용 적합성 심사

가. 경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및 임용 적합성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임용 적합성 심사는 응모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 성적, 공개발표,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 성적 등을 고려하여 전문영역의 경험 15점, 학생지도에 관한 계획과 실적 등을 5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경력과 제출서류의 일치 여부 심사는 일치 또는 불일치로 평가한다.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서울대학교의 인사 관련 상위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각종 평가표 작성 등) ① 학과장은 교원임용후보자조서, 총괄연구실적심사보고서, 면접심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채심사종합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이때 평가항목별 점수는 교원임용후보자조서, 총괄연구실적심사보고서, 면접심사보고서의 점수를 옮겨 적는다.

- ③ 원장은 공채심사종합평가표를 확인하고 교원임용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④ 교원임용심사보고서는 심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되 교원임용후보자조서에서 적격하다고 평가된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공채심사종합평가의 최종점수가 8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제13조(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교원임용심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임용적합성을 평가하고 어떤 후보자를 임용 추천 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 ② 임용추천되는 후보자의 임용추천 직급과 계약기간을 결정한다. 신규채용교원의 직명별 최소소요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연수는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교수 14년, 부교수 9년, 조교수 4년으로 한다.

제14조(신규채용후보자의 추천) 원장은 임용심사보고서와 함께 신규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부 칙(2020.3.12.)

-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25.)

- ①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1.13.)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8.7.)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